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및 진급시험 등의

공결처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들의 졸업시험 및 진급시험 등의 공결처리와 관련하여 안내 드리고자 하니, 숙지하여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1. 기존방법

필수 응시인 경우에도 병원 진단서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승인 하에 미응시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결 처리 후 성적에 미반영 함.

2. 주요 변경내용

(1) 진단서 제출 대신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서의 시험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상급병원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 해당)

(2) 응급사항의 발생으로 미 응시한 경우 승인 없이 결석. 이후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결처리 가능

(3)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본인이 반드시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여 시험의 응시가 어려운 경우

- 관련 서류 제출 후 법학전문대학원장 승인 하에 공결처리 가능

(4)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사망 했을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5)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청첩장 등

으로 공결처리 가능

3. 성적처리 방안

(1) 공결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하는 시험의 운영계획에 따라 공결 처리된 시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험으로 성적 산정 또는 재시험 기회 제공

(2) 공결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시험 기회는 없으며, 해당 성적은 0점 처리 후 성적계산하거나 불합격처리

(3) 공결신청 없이 무단으로 미 응시하는 경우

- 재시험 기회 없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처리 가능

4. 2022학년도 3월 2일 개강이후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을 적용함.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